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62 발의연월일: 2022. 6. 10.

발 의 자: 황보승희 · 윤재옥 · 박성민

하영제 · 정우택 · 권명호

이채익 · 조명희 · 백종헌

유경준 · 이양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 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은 다양한 온라인 비디오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국내와 해외 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16년 6,580건이었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가 2021년 16,167건으로 증가하면서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어 적시성이 필요한 콘텐츠 출시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과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등 피

해가 심화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비디오물 관련 업계의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가 양립할 수 있도록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후규제 및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안 제50조의2부터제50조의8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을 "정보통신망을"로한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 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제50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가운데 기존의 등급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순 제호 변경, 로고 삽입·제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정을 거친 비디오물. 이 경우 기존 비디오물의 등급을 해당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 6.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가운데 기존의 등급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일부 장면의 삭제 또는 추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편집 처리가 이루어진 비디오물. 이 경우 기존 비디오물의 등급을 해당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고한 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이용자가 시청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확인할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할 수있다.

-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고) ①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및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일 것
 -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 2.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고한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등급업무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신고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따를 것
 - 5.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 6.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 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 분류사업자가 유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 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2. 제50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50조의7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 정을 명하여야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 방법과 절

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의7(사후규제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 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등급분류의 조 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 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등급분류에 관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에 대하

- 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⑦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 온라인비디오물의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 필요한 등급분류업무 지원 및 국제협력 체계 구축
 -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업무 지원

- 6. 자체등급분류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 자체등급분류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 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의4 각 호에서 정하 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5항에 따른 조치 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1항의"를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 제1항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2조제1항의"를 "제50조의7제3 항 또는 제52조제1항의"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의"를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 의"로 한다.

제9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0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
	물을 말한다.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	19
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	
·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u>「정보통신망</u>	<u>정보통신망을</u>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	
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	
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	
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	
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 23. (생략)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저지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리하지아니하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20. ~ 23. (연행과 같음)
∥50조(등급분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 5.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 오물 가운데 기존의 등급분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단순 제호 변경, 로고 삽입・제거 등 문화체육관광 부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수정을 거친 비디오물. 이 경우 기존 비디오물의 등 급을 해당 비디오물의 등급으 로 본다.
- 6.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가운데 기존의 등급분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5.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한다.

③ ~ ⑦ (생 략) <신 설> 정도의 일부 장면의 삭제 또는 추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재편집 처리가 이루어진 비디오물. 이 경우 기존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 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자 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고한 자 (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 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 물의 이용자가 시청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 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 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 류를 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 적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고) ① 온라인비디오물에 대 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로서 자본금 및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일 것

- 나.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 같은 호 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일 것
-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

 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일 것
- 2.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 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 된 사실이 없을 것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고 한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아 수 행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자체 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 및 운 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자체등급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제1 항의 신고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 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 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 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 조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 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 요 청에 따를 것

- 5.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 는 온라인비디오물을 이용자 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 6.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원용할수 있다.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업무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신 설>

<신 설>

- <u>기간을 정하여 제50조의2에 따</u> <u>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u> <u>다.</u>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2. 제50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50조의7제5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4.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 류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 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14일 이 내에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 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 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 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 하여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4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 방 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의7(사후규제 등) ① 영상 물등급위원회는 아동과 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등급 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 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 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 려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있는 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 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 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 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 우 그 내용과 사유를 자체등급 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고 등급분류의 조정을 요

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 급분류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 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등급분류사 업자는 등급분류에 관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있다.

- 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 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 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 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4 항에 따른 등급분류 조정 요구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결정의 통보 방 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 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 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 급분류를 위한 정보통신시스 템 구축 및 운영
- 2. 온라인비디오물의 해외시장진출에 있어서 필요한 등급분

- 류업무 지원 및 국제협력 체 계 구축
-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 인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

 분류책임자에 대한 교육시스

 템 구축 및 운영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업무 지원
- 6. 자체등급분류정보 이용자의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 자체등급분류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 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 저 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 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 • 파 매·대여(이하 "유통"이라 한 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 한 비디오물
- 2. (생략)

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 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0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 0조의7제5항에 따른 조치 여부 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업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레533	조(불법	비디	오딑	물의	판매	등
의	금지)	1				
1.	제50조	제1호	항 되	든	제50조	:의2
_	ルカース					

- 2. (현행과 같음)
-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 제50조의7제3항 또는 제52조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 된 해당 비디오물

4. • 5. (생략)

② • ③ (생 략)

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 지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1항의
4.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베65조(표시의무) ①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
항의
② (현행과 같음)
에 98조(과태료) ①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50조의6제1항을 위반하</u>
여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